

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9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19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는 부분과 조문만 표기된 것을 조항까지 표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불부합 조항 및 세부조항 표기 개정
 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의 신설 (2019.8.20.)로 조례에 적용되는 조항 현행화(조례안 제1조 중 제6조제2항 ⇒ 제6조제3항)
 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문만 표기한 것을 조항까지 표기 (조례안 제3조 중 제6조 ⇒ 제6조제3항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3. 11. 23. ~ 2023. 12. 13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[붙임 5]

○ 방침결정문 : [붙임 6]

【붙임 1】

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2항”을 “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6조”를 “법 제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에너지정책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에너지정책과장 최 승 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에너지자원팀장 강 영 민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강 현 (행정 2840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허가요건) 법 제6조 및 규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세부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3조(허가요건) 법 제6조제3항----- -----.</p>